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70

발의연월일: 2024. 6. 12.

발 의 자:김위상·박충권·김선교

임이자 · 최수진 · 고동진

김형동 · 송석준 · 강대식

이인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며 인공지능(AI)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였음.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기 시작했으며, 공공기관과 대기업 등 다수 기업에서는 채용 과정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는 추세임.

하지만,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함께 지속적으로 이슈가 된 인공지능 기술의 편향성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으므로 기업의 채용 과정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데 있어 보다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이에 채용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업이 채용과정에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는 경우 특정 인종, 성별, 출신 지역, 연령 등에 편향성을 가지지 않았음을 사전에 검증받도록 하고자 함. 또한 피채용인의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업이 채용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경우 피

채용인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고지할 의무를 부여하고자 함(안 제8조의 2 신설 및 제17조제3항).

법률 제 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8조의2(인공지능 채용) ① 구인자는 인공지능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채용(이하 "인공지능 채용"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 구직자에게 채용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고지 방법은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 ②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 채용에 활용되는 기술이 인종·성별·연령 등에 대하여 편향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사전고지의 시기, 제2항에 따른 기술 점검 의뢰의 주기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구직자에 대한 사전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공지능 채용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채용절차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8조의2(인공지능 채용) ① 구인
	자는 인공지능 관련 기술을 활
	용하여 채용(이하 "인공지능
	채용"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 구직자에게 채용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해당 사실을 알
	려야 한다. 이 경우 고지방법은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인
	공지능 채용에 활용되는 기술
	이 인종ㆍ성별ㆍ연령 등에 대
	하여 편향되지 않도록 하기 위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
	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주기적
	으로 점검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전고지의
	시기, 제2항에 따른 기술 점검
	의뢰의 주기 등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u> 정한다.</u>
제17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17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3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1. ~ 3. (생 략)

④ (생 략)

-----.

- 1.제8조의2제1항을위반하여구직자에 대한 사전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
- 2. ~ <u>4.</u> (현행 제1호부터 제3 호까지와 같음)
- ④ (현행과 같음)